

## 작업중지 및 비상 대응 절차

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에 따른 비상 대응 절차입니다. 본 문서는 현장 게시판과 휴게 공간에 게시합니다.

### 01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

- 구조물의 예상치 못한 균열 · 변형 · 이상음 발생
- 강풍 · 폭우 등으로 낙하 · 비산 · 지반 연약화 위험이 커진 경우
- 중장비와 근로자의 작업 반경이 겹치는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경우
- 가스 냄새, 분진 급증 등 유해 요인이 관리 범위를 벗어난 경우
- 그 밖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

### 02 대응 절차

| 단계 | 행동 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중지 · 대피 | 위험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주변에 알린 뒤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보고      | 관리감독자(박정우) 또는 현장소장(김성훈)에게 즉시 보고합니다. 인명 피해 시 119를 먼저 호출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조치      | 현장소장은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출입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(1개월 이내). |
| 4  | 재개      | 위험 요인이 제거되고 현장소장이 안전을 확인한 후에만 작업을 재개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03 비상 연락망

| 구분      | 성명  | 연락처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|
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현장소장    | 김성훈 | 010-4728-3391      | 총괄        |
| 관리감독자   | 박정우 | 010-9315-2247      | 해체 구역     |
| 소방 · 구급 | 119 | 성동소방서 02-2286-0119 | 한양대병원 응급실 |

#### 근로자 보호

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. (산업 안전보건법 제52조)